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52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차규근
이해민 · 강경숙 · 김준형
신장식 · 서왕진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역시 검사가 지휘하도록 하여 조사와 집행 전반에서 검사와 경찰 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 수사와 이에 수반되는 조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고, 검사와 관계기관의 역할도 지휘·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처분청구 여부 판단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안관찰처분

의 집행 주체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검사의 집행지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사·집행 단계에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7조)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保安觀察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항 외의 부분의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조사)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제7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청구에 필요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보안관찰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항 외의 부분의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보안관찰처분은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집행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결정

서등본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후단 중 “消滅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決定을 取消”를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집행을 재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第9條(調査) ①檢事は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觀察處分請求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保安觀察處分對象者, 請求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保安觀察處分을 필요로 하는 資料를 調査할 수 있다.</u> <u>②司法警察官吏와 特別司法警察官吏(이하 “司法警察官吏”라 한다)는 檢事の 指揮를 받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할 수 있다.</u> <u>第17條(保安觀察處分の 執行) ① 保安觀察處分の 執行은 檢事が 指揮한다.</u> <u>②第1項의 指揮는 決定書謄本을 첨부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u> <u>③檢事は 被保安觀察者가 도주하거나 1月 이상 그 所在가 불</u>	<u>제9조(조사) ①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제7조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청구에 필요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보안관찰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 <u>②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u> <u>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① 보안관찰처분은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집행한다.</u> <u>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결정서등본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 <u>③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u>

<u>명한 때에는 保安觀察處分の</u> <u>執行中止決定을 할 수 있다.</u> 그 사유가 <u>消滅된 때에는 지체없이</u> <u>그 決定을 取消</u> 하여야 한다.	<u>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보</u> <u>안관찰처분의 집행을 중지할</u> <u>수 있다.</u> 그 사유가 <u>소멸된 경</u> <u>우에는 지체 없이 집행을 재개</u> 하여야 한다.
---	---